

|       |             |
|-------|-------------|
| 의안번호  | 2204826     |
| 의 퇴 인 | 백승아 의원      |
| 회 답 일 | 2024.10.29. |
| 추계번호  | 24C4456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8조의2<br>(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무규정 |
| 2  | 안 제21조<br>(통합교육)           | (제6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량규정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8조의2<br>(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등)<br>안 제21조(통합교육)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수교육교원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통합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교육부는 '23년 이후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설,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상향 표준화된 표준약관 제정,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심리1)·법률 상담 지원 확대,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악성민원대응체계 구축 등을 시행

1) 교원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및 상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자료: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2024.05. 교육부)

- 특히,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보호센터<sup>2)</sup>를 통해 심리상담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방안”을 수립하여 희망하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 진단(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상담 및 치료지원 등을 계획함
  - 시·도교육청에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마음선(先)심리상담 지원’<sup>3)</sup>, ‘마음생(生)심리상담지원’<sup>4)</sup>, ‘마음동(同)심리상담지원’ 및 ‘치료비용지원’<sup>5)</sup>, ‘마음행(行)심리상담지원’<sup>6)</sup>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초기 심리상담 및 협력기관 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sup>7)</sup>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목표 하에 협력 기간 통합교육 여건조성,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일상적 장애공감문화정책을 세부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sup>8)</sup>
  - 참고로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법 제21조제1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법 시행일 전인 2024년 현재에도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계획’ 등에 따라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해 순회교육을 지원 및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모델 학교인 정다운 학교가 선정·운영되고 있음

---

2) '23년 대비 '24년에는 센터수를 늘리고(25개→32개, 시·도당 1개 이상), 상주인력을 '23년 131명에서 '24년 18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비상주상담 변호사 인력 1,376명을 운용하고 있음(자료: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교육부)

3)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교원에 대하여 마음 건강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사업으로 1회 50분의 심리상담 8회가 지원됨

4)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지원이 시급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마음 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으로 1회 50분의 심리상담 10회가 지원됨

5)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를 인정 받은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으로 1회 50분의 심리상담 20회가 지원되고,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약품 비용 등 치료비용이 지원됨

6) 개인 심리상담(마음先, 마음生, 마음同)지원을 받은 교원 중 자살위험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집중 지원으로 추가 심리상담 5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용 5회(각 50만원 이내)가 지원됨

7) 협력기관 이용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로 1인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됨

8)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제도개선(정책지원체계 정비 및 통합학급 여건 개선)과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간 협력 증진(연수 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정다운학교 확대운영 등),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내실화와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됨 (자료: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 법의 제안이유 등<sup>9)</sup>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교원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사업의 신설, ‘통합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 또는 신설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이 곤란
  -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체 교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 사업 외에 ‘특수교육교원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신설될 가능성과 통합교육 지원사업의 확대 또는 신설 가능성이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진행중이며, 특수교육 교원 등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 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현시점에서 신설·확대될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교육청별로 교육여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소요예산에 대한 일률적 예측이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법 시행에 따라 추가될 사업내용과 예산소요에 대한 구체적 예상이 어려운 경우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Ⅲ. 부대의견

- 없음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826호) 제안이유  
 (...)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하 생략)

## I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사회비용추계과 | 정혜승 | 이진우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정혜승 | 02-6788-4627 | hs0387@assembly.go.kr |